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회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12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대표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그린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LIG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차티스(Chartis)	080-2080-365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농협손해보험	1644-9000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 동 안내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개요를 소개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또는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1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2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 대상 업종 (22개 업종)

음식점, 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문화, 스포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기타 업소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1. 신규 다중이용업소 2013. 2. 23.부터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 부터)

2. 기존 다중이용업소 2013. 8. 22.까지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 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0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인명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후유장애 :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부상 :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재산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05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0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확인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